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3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이용우·신장식・박지혜

전진숙 • 박홍배 • 이학영

장철민 · 임오경 · 한창민

정혜경 · 전종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, 202 4년에 체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(구 체당금) 지급액 도 7.272억 원에 달하였음.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.8%에서 2024년 21.8%로 하락하였으며,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지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도 20 19년 - 307억원에서 2024년 - 173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(총 적립금은 2019년 9587억원에서 2024년 3472억으로 감소).

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 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.

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

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아울러 현행 「근로기준법」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.

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「근로기준법」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,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근로자 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산목록 제출명령 및 과세자료 확인, 사회보험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등).

나.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대상이 되는 대지급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그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, 부칙제3조).

법률 제 호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업주를"을 "사업주(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8조의2까지, 제12조·제13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같다)를"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변제금의 징수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변제금"이라 한다)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, 제26조의2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, 제28조의7, 제29조, 제32조 및 제42조(제1항제3호·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)를 준용한다. 이경우 "보험가입자" 또는 "보험의 당연가입자"는 "사업주"로, "보험

료" 및 "보험료, 환수금"은 각각 "변제금"으로, "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"은 "연체금"으로, "공단" 또는 "건강보험공단"은 "고용노동부장관(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)"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변제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제7조(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제7조(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급금의 지급) ① 고용노동부장 급금의 지급) ① -----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 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 자의 변제에 관한 「민법」 제4 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 ----- 사업주(「근로 하여 지급한다. 기준법」 제44조 또는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 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8조의2까지, 제12 조 · 제13조 및 제22조부터 제25 조까지에서 같다)를 ---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생 략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2(변제금의 징수) ① 고용 <신 설> 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 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 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

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변제금"이라 한다) 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제25조, 제26조의2, 제27 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8조 의2부터 제28조의5까지, 제28조 의7, 제29조, 제32조 및 제42조 (제1항제3호·제4호 및 제2항제 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험가입자" 또는 "보험의 당 연가입자"는 "사업주"로, "보험 료" 및 "보험료, 환수금"은 각각 "변제금"으로, "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"은 "연체금"으로, "공단" 또는 "건강보험공단"은 "고용노동부장관(이 법 제27조 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 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 다)"으로 본다.